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농산물 검사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○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공공용 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,

○ 국민권익위원회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」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며,

○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에 '쌀가루' 제분업을 구분 명시하여 시설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임

◇ 주요내용

○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추가(안 별표1)

○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(안 별표2, 별표5)

- 가중처분 적용시점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(안 별표2)
-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(안 별표2, 별표5)

○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에 '쌀가루 제분업'을 신설하고, 쌀가루 제분업 시설기준으로 '분쇄장치'와 '체장치'를 갖추도록 규정(안 별표3)